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5월 31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6월 10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6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 국 신설 및 부서 재배치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 및 감축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창군 지도직공무원(지도관·지도사) 비율 조정(별표 2)
- 평창군 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총괄표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욱)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6. 10.)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4. 5. 31.
- 회부일자 : 2024. 6. 10.
- 상정일자 : 2024. 6. 10.

2. 제안이유

- 국 신설 및 부서 재배치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 및 감축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평창군 지도직공무원(지도관·지도사) 비율 조정(별표 2)
- 평창군 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총괄표 수정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지자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제30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토대로 군정 핵심사업들의 실행력 강화 등을 위해 조정된 국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4급 1명을 증원하고 5급 1명을 감하였으며, 인력 축소 기조에 맞춰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지도 1명을 감하여 최종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765명에서 (개정) 760명으로 감하고, 이에 따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782명에서 (개정) 777명으로 감하였음.

구 분	계	정무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지도
현재	782	1	4	37	181	215	200	113	31
조정	777	1	5	36	181	214	199	111	30
증감	△5	-	+1	△1	-	△1	△1	△2	△1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업무 이관, 직급 조정 등을 반영하여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 확인됨.

다만, 개정 조례안의 정원 증감 변동은 이번 회기 함께 제출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붙임 2]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 평창군수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2
----------	-----

제출년월일 : 2024. 5. 3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국 신설 및 부서 재배치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 조정과 현원 없는 정원 감축을 위하여 자치법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창군 지도직공무원(지도관·지도사) 비율 조정(별표 2)

나. 평창군 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총괄표

구 분	계	정무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지도
현재	782	1	4	37	181	215	200	113	31
조정	777	1	5	36	181	214	199	111	30
증감	△5	-	+1	△1	-	△1	△1	△2	△1

라. 평창군 지방공무원 기관별 정원 총괄표

구분	계	본청	평창군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현재	782	401	17	192	21	151
조정	777	398	17	191	21	150
증감	△5	△3	-	△1	-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4. 4. 22. ~ 2024. 5.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634호, 행정과-9784(2024. 4. 19.)호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기획실-7855(2024. 5. 20.)호]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실-7855(2024. 5. 20.)호]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17850(2024. 5. 21.)호]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실-7973(2024. 5. 22.)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실-8095(2024. 5. 24.)호]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82명”을 “77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65명”을 “760명”으로 한다.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 율	1%이내	5%이내	24%이내	30%이내	27%이내	12%이상	1%이내

비 고 : 1.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	100%	8% 이내	92%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비 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77	777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46	746				
4급	5	4		1		
4~5급						
5급	36	19	2	6	1	8
6급 이하	705	705				
전문경력관 소계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6	26				
지도관	2			2		
지도사	24	24				
별정직 계	0	0				
6급상당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82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765명</u></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777명</u>----- -----.</p> <p>1. ----- <u>760명</u></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이영배
연락처	(033) 330 - 2210